

서울특별시양재동양곡도매시장

업무규정중개정규정을 다음과 같이
발령한다.

1999년 9 월 20 일

서울특별시장 고건

서울특별시양재동양곡도매시장업무규정중개정규정안

1. 개정이유

서울특별시농수산물도매시장조례의 개정('99. 6. 30)에 따라 관련 규정을 정비하고, 내용이 다소 막연하고 추상적인 일부 규정을 구체화·명확화하려는 것임.

2. 주요골자

가. 종도매업 혁기취소 사유중 그 내용이 막연하고 추상적인 일부 규정을 삭제함(안 제27조 제1항 제4호).

○ 종도매업무를 수행함에 있어서 재력 또는 신용의 부족으로 거래 관계자에게 현저한 손실을 끼칠으로서 종도매업을 계속하는 것이 심히 부적당하다고 인정되는 경우

나. 실효성을 상실한 도매시장법인의 거래량 및 가격의 계시의무를 폐지함(안 제47조제1항)

다. 기타 경매 참가 거부사유, 반입물품의 제한사유 및 시설사용의 제한에 관한 규정중 일부 추상적이거나 막연한 문구를 정비함(안 제36조, 제55조 및 제65조).
(제47조제1항)

3. 참고사항

가. 관계법규 : 농수산물유통및가격안정에관한법률

제37조(거래질서의 유지) ① 누구든지 도매시장에서의 정상적인 거래와 시설물의 공공적 이용을 방해하거나 적절한 위생·환경의 유지를 저해하여서는 아니되며, 개설자는 도매시장에서의 거래질서가 유지되도록 필

요한 조치를 하여야 한다.

2) - ③(생략)

제62조(명령) ① 농림부 장관·해양수산부 장관 또는 시·군지사는 도매시장 및 공판장의 적정한 운영을 위하여 필요하다고 인정한 때에는 도매시장 또는 공판장의 개설자나 도매시장 범위에 대하여 업무규정의 면경·업무처리의 개선 등 감독상 필요한 조치를 명할 수 있다.

② (생략)

나. 예산조치 : 별도조치 필요없음

다. 기타 : ① 신·구 조문 대비표, 별첨

② 규제심사 : 제4차 규제개혁위원회 심의필

서울특별시양재동양곡도매시장업무규정중개정규정안

서울특별시양재동양곡도매시장업무규정중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27조제1항제4호를 삭제한다.

제36조제1항제1호를 다음과 같이 하고, 제3호를 삭제한다.

- 예치한 보증금 또는 탑보 이상으로 거래한도를 초과 하는자

제40조제3호의 “농립수산부장관”을 “농림부장관”으로 한다.

제47조제1항을 삭제한다.

제55조종 “사장이 위생상 유해하다고 판정하거나 법령으로 그 소지나 거래가 제한 또는 금지된 물품”을 “법령으로 소지나 거래가 제한 또는 금지되거나 위생상 유해하다고 정한 물품”으로 한다.

제65조제1호 내지 제6호를 다음과 같이 한다.

- 화재등 재해의 예방, 교통의 정리 또는 시민 보건위생상 필요할 때
- 불공정 거래, 환경저해, 공용시설 무단침용 등 도매시장 질서를 해칠 때
- 시설을 사용함에 있어 제3자에게 시설의 전부 또는 일부를 전대하거나 위탁관리 하였을 때
- 시설의 용도를 지정한 후 도매시장의 여건변경으로 시설의 용도가 변경되거나 시설을 철거하고자 할 때
- 사용자가 고의 또는 과실로 시설을 훼손하거나 벌실하였을 때
- 사용료, 임대료, 관리비 등을 3회이상 체납하였을 때

부 칙

이 규정은 발령한 날부터 시행한다.

신·구 조문 대비표

현 행

개 성

제27조(중도매입의 이자취소) ①지정은 중도매입 제27조(중도매입의 이자취소) ①
이 다음 각 호의 1에 해당되는 경우에는 중도매
입의 이자를 취소할 수 있다.

1. ~ 3.(생략)

4. 중도매입부를 수행함에 있어 제47조(설정)
물의 부족으로 거래관계자에게 현저한 손실
을 가짐으로써 중도매입을 계속하는 것이 신
회 불질탕하다고 인정되는 경우

5. ~ 7.(생략)

제36조(경매참가기부 및 탑찰증지) ①도매법인은
다음 각 호의 1에 해당되는 중도매입 및 경매참
가인 이외에는 경매참가를 거부하거나 경매참
가시 차별대우를 하여서는 아니된다.

1. 거래한도를 초과하는 자

2. (생략)

3. 사장이 특별히 경매참가를 제한한 자

②(생략)

제40조(대량입하품·표준규격품의 후대) 시행규
칙 제21조의 규정에 의해 다음 각 호의 1에 해
당하는 경우는 무선경매 실시 등 후대조치를
할 수 있다.

1. ~ 2.(생략)

3. 농업수산부장관이 정하는 품질원증증

4. (생략)

제47조(유통정보 공개 등) ①도매법인은 면지
제24호 서식에 의거 거래량 및 가격 등을 개
시하여야 한다.

②(생략)

1. ~ 3.(현행과 같음)

5. ~ 7.(현행과 같음)

1. 예치한 보증금 또는 탑보 이상으로 거래
한도를 초과하는 자

2. (현행과 같음)

(설정)

②(현행과 같음)

1. ~ 2.(현행과 같음)

3. 농업수산부장관

4. (생략)

제47조(유통정보 공개 등)(설정)

②(현행과 같음)

1. ~ 4.에 한정

현 행

개정

제65조(반입물품의 제한)로예법원은 노예시장에 제65조(반입물품의 제한)

반입된 물품중 시장이 위생상 유해하다고 판정하거나 법령으로 그 소지나 기재가 제한 또는 허용되는 물품에 대하여는 그에 대한 수수를 거부하여야 한다.

제65조(시설사용의 유제)사장을 비롯한 후회제65조(시설사용의 제한)

경우에는 노예시장 시설의 사용기준 대비에 시설의 전부 또는 일부에 대한 사용사항의 경우 사용의 제한 또는 설치 등 필요한 조치를 취할 수 있다.

1. 일부의 감독, 재해의 예방, 교통의 정비 또는 보건 위생상 특히 필요하다고 인정될 때
2. 시설 설치를 해지거나 이를 해친 권리가 있다고 인정될 때
3. 시설을 사용함에 있어 이를 이용한 부작 또는 조건을 위반하거나 사용목적의 달성이 곤란하다고 인정될 때
4. 시설의 용도를 지정한 후의 사정변경으로 그 사용이 불필요하거나 무리당하게 되는 때
5. 고의 또는 과실로 인하여 시설을 멀심 혹은 파손하였을 때
6. 사용료 기타 납부금의 납입을 태만히 하였을 때
7. (생략)

법령으로 소지나 기재가 제한 또는 허용되는 물품이나 위생상 유해하고 신한 물품

1. 화재등 재해의 예방, 교통의 정비 또는 시민 보건위생상 필요할 때
2. 물류장, 거래, 환경 피해, 물류시설 무단침용 등 노예시장 설치를 해친 때
3. 시설을 사용함에 있어 제3자에게 시설의 전부 또는 일부를 전내하거나 위탁관리 하였을 때
4. 시설의 용도를 지정한 후 노예시장의 이전변경으로 시설의 용도가 변경되거나 시설을 철거하고자 할 때
5. 사용자가 고의 또는 과실로 시설을 해손하거나 멀심하였을 때
6. 사용료, 임대료, 관리비 등을 3회이상 세금하였을 때
7. (현행과 같은)